##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1. 생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
	상)
2. 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
	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
	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
	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선간 사용당 1.85테라베크텔 미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리) 기기세 카비티 거스크리 여기 기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중앙 5.7네더메크를 미딘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이 미뷰리키 시나된 비키셔드이이 ›	[전단되기 전기 표정 역정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 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 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3) 방사선발생장치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 암페어 1대 이상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 어 2대 이상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되지 않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용하는 경우	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